

01.

[정답] ④

[해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제417조) 즉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02.

[정답] ①

[해설] 비록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동행할 당시에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거부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은 위에서 본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사법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법경찰관이 그로부터 6시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에 대하여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행의 형식 아래 행해진 불법 체포에 기하여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 소정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6.7.6. 2005도6810).

03.

[정답] ③

[해설] ㉠ 자백배제법칙(헌법 제12조7항) ㉡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3항)

㉢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1항) ㉣ 무죄추정원칙(헌법 제27조4항)

㉤ 피구속자의 가족 등이 구속 사유를 통지받을 권리(헌법 제12조5항)

㉥ 형사보상청구권(헌법 제28조) ㉦ 일사부재리원칙(헌법 제13조1항)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5항)

04.

[정답] ④

[해설]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59조의2).

즉 재판 진행 경과를 통지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05.

[정답] ②

[해설] ㉡㉢㉣이 옳은 지문이다.

㉠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아니라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다(제200조의3 제1항).

㉢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8.3.27. 2007도11400등 다수).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00조의3 제6항).

06.

[정답] ①

[해설]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2. 1. 자 99모161).

07.

[정답] ①

[해설]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8. 2. 27. 97도1770).

08.

[정답] ③

[해설]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제244조의3 제1항).

09.

[정답] ④

[해설] ④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2005도1247).

- ①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92.10.27. 92도1377). 즉 판례는 범의유발형만을 함정수사로 보고있다.
- ②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7.12. 2006도2339).
- ③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 결사유에 해당한다.

10.

[정답] ②

[해설]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도 보석조건이 된다(제98조6호).

11.

[정답] ①

- [해설] ① 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에게 대하여 발송된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제107조 제1항, 제219조). 전항 이외의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그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제107조 제1항, 제219조). 즉 피의자가 발송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제91조).
 - ③ 공무상 비밀(제111조)
 - ④ 업무상 비밀(제112조)

12.

[정답] ④

[해설] ④ 검사,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의 대가보관,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결정을 함에는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제135조, 제219조).

- ①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것은 가환부이고 압수물의 환부는 종국처분으로서 압수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② 압수물이 범죄사실의 증거에 공할 물건인 경우에는 압수계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환부는 할 수 있으나 환부는 할 수 없다.
- ③ 사법경찰관도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권한이 있고 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을 뿐이다(제219조).

13.

[정답] ②

[해설] ② 법원의 검증은 증거조사의 일종으로 공판정 내외를 불문하고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① 영장주의 예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216조, 제217조)
-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141조제3항, 제219조).
- ④ 피고인,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제141조제2항, 제219조)..

14.

[정답] ③

[해설] ③ 법원은 제1항의 결정(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
- 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규칙 제34조제2항

15.

[정답] ②

[해설]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의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97도2215).

16.

[정답] ④

[해설]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에게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는데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견해는 ㉠ - ㉡ - ㉢ - ㉣으로 논리가 전개되고 당사자능력을 부정하는 견해는 ㉠ - ㉡ - ㉢ - ㉤으로 논리가 전개된다.

17.

[정답] ②

[해설] 간통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유효한데 2008. 8. 16. 고소는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이므로 무효인 고소이다. A가 2009. 1. 15.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공소제기전에는 고소추원이 인정되지만 이미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무효가 치유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공소제기는 무효인 공소제기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18.

[정답] ③

[해설] ③ 제221조의 2 제5항

-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제221조의 2 제1항).
- ②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④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21조의 2 제6항).

19.

[정답] ①

- [해설] ① 미국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위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06.1.13. 2003도6548).
- ② 제315조 1호 적용
- ③ 제315조 2호 적용
- ④ 제315조 2호 적용

20.

[정답] ③

[해설]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이다.

- ㉠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즉결심판에 관한절차법 제3조 제1항).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이다.
- ㉡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4조).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0조). 자백보강법칙과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